

긴급지원사업 신청안내



긴급지원사업이란?

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, 의료, 주거지원 등 필요한 긴급지원을 통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

신청대상

- 주소득자의 사망, 가출,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-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
-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
- 주소득자의 휴업, 폐업,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
- 공과금(전기, 도시가스) 및 월세가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

선정기준

- 소득 : 중위소득 75%이하 (단위:원)

구분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
소득인정액	1,218,624	2,074,953	2,684,265	3,293,576	3,902,887	4,512,199

- 재산 : 1억 3,500만원 이하
- 금융 : 500만원 이하(주거지원 700만원 이하)

지원내용

- 생계지원

가구수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
지원금액	418,400	712,500	921,800	1,131,000	1,340,300	1,549,500

- 주거지원

가구수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
지원금액	374,200		621,700		820,100	

- 의료지원 : 최고 300만원 한도
- 그 밖의 지원(교육지원, 장제비, 해산비, 연료비)

문의사항

- 구청 희망복지과 긴급지원담당 560-5882~4, 각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

